

2023년  
제6차

## 제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작 성 자	이사장 민동세
작성년월일	2023. 10. 4.

## 2023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2023년 9월 14일(목) 개최된 2023년 제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보고입니다.

###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3. 9. 14(목) 19:30~21:30, 도우누리 회의실
- 참석이사 : 정원 14명의 이사 중 13명 참석
  - 참석이사 : 민동세(이사장), 권은자, 김미진, 김알음, 문호영, 박진환, 송인옥, 이성례, 이병화, 이현주, 김용운, 김은미, 윤여운 이상 13명
  - 불참이사 : 송윤주 이사 1명
- 참관 : 장이환(행복중심광진생협 이사장)

### 2. 안건상정 및 토의결과, 의결내용

- 안건상정 및 회순채택 : 이사회 회의지에 제출된 안건순서를 수정하고 회의순서를 전원 이사의 동의로 채택하다.
  - 보고안건
    - 제1호 : 전차 회의록 보고
    - 제2호 : 도우누리 사업장 운영보고
  - 의결안건
    - 제1호 : 2023년도 사업장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 행복중심광진생협 매장 운영의 건
    - 제3호 : 중계요양원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의 건
    - 제4호 : 도우누리 정년제도 개선의 건
    - 제5호 : 도우누리 조합비 제도화의 건
    - 제6호 : 한우리돌봄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보고안건 제1호 : 이사장이 2023년 제5차 임시(서면)이사회 의사록 내용은 이사회 개최 후 SNS를 통해 사전 검토한 내용이라고 보고하고 반대 없이 회의록으로 채택하다.
- 보고안건 제2호 : 2023년 8월말 기준 도우누리 법인사무처 활동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다.
  - 이사장이 이사회 개최 전 18시 30분부터 우리 조합의 사업장 운영보고를 이사장 (늘푸른돌봄센터 강서양천점, 늘푸른돌봄센터 중랑점, 한우리돌봄센터, 돌봄플러스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능동꿈맞이어린이집, e편한2단지어린이집, 광진주거복지센터, 도담노인지원주택), 문호영이사(늘푸른돌봄센터 노원점), 김미진이사(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이성레이사(서울아가마지, 서울아가마지 중랑점)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이 우리 법인의 조합원현황, 사업장별 증자현황, 사무처 재직자 현황을 보고하고, 성동세무서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없이 종결된 것, 가맹점사업 브랜드로 케어누리(carenuri)를 출원한 것, 도우누리 복지용구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사업장 활동 보고 자료를 참고할 것을 주문하고, 활동 보고에 대해 특별한 문제 제기나 의견이 없어 단위별 주요 활동 보고를 마친다.
- 의결안건 제1호 : 2023년도 사업장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후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다.
  - 송인옥 이사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계획대비 증가하지 않아 세입예산과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 금년도 약 20% 성장(이용자 수 40여명 증가)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용자 사망 및 이동, 제공인력 부족 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
    - 본 예산 대비 세입이 세입이 16.9% 1,002,949,539원 감소하는 4,916,490,461원으로 추경(안)을 작성함

- 세입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하고 사무실 관리비 인상, 직원사업비 증액 등으로 세출(안)을 작성
- 김용운 이사가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운영사업 재수탁을 체결하면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 서울시와 재수탁을 체결하면서 관행적으로 부담하던 법인전입금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부담하기로 협의함
  - 이사 사용된 법인전입금은 유지하고 이후 법인전입금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세출(안)을 작성
- 민동세 이사장이 2023년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이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 2022년 회계결산을 마치고 발세안 반납금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의 추경(안)이며, 2023년 3월 29일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보고, 승인받았으나 보고가 누락되어 금번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함
- 이병화 이사가 한우리돌봄센터 세출내역서에 기관운영비를 감액하였는데 산출내역에는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송인옥 이사가 오탈자로 수정된 내용으로 승인할 것을 주문하다.
- 이사장이 다른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묻고, 참석한 이사들이 없다고 답하자 제출된 원안에 대해 의결을 묻다.
  - 참석한 이사 모두가 원안에 동의하고 이사장이 가결되었다고 하다.
- 주요 의결 사항
  - (1) 2023년도 한우리돌봄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 (2) 2023년도 노인지원주택사업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 (3) 2023년도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 의결안건 제2호 행복중심광진생협 매장 운영의 건을 상정하고 질의, 논의 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장이 안건의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장이환 광진생협 이사장에게 제안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장이환 이사장이 그 동안 광진생협 이사회가 생협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해 왔는데 그 배경으로 생협운동의 환경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 경영적 측면으로 근근히 선방해 왔다고 설명하다.
  - 생협 연합회가 부실하고 실천력이 낮다는 평가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행복중심 연합회 탈퇴를 결정하였음
  - 생협은 먹는 문제 더하기 생활서비스로 전략적 전환 흐름이었는데 이사회에서 가까이 있는 도우누리와 함께 하자는 의견을 모음
  - 급하게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업개발비를 받아서 매장을 개선하고 있는데 도우누리와 협력에 따라 개선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윤여운 이사가 법인격 통합이 아니라 하고 원주에서 아이쿱과 의료사협이 통합 중에 있는데 아이쿱을 해산하면서 의료사협에 통합되는 형식이라고 설명하다.
  - 법인 통합은 매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니 생협조합원을 도우누리 조합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함
- 민동세 이사장이 지금 광진생협의 매장 보증금과 시설장비 등은 광진자활의 소유이며 도우누리와 매장운영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 간 자산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 송인옥 이사가 긍정적이라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 살림에서 돌봄에 대한 기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하는데 성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우리의 그림은 무엇인지, 광진생협 조합원을 도우누리 조합원으로 통합하는 경우 직원조합원 비율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광진생협 운영이 어렵고 광진자활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뀐 것인지 질문하다.
  - 민동세 이사장이 한살림서울이 독립적인 법인으로 돌봄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으나 우리와 다른 형태라고 설명하고, 직원조합원 비율은 임원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부분은 도우누리가

후원자조합원의 확대, 조합비 제도마련 등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라고 대답하다.

- 김은미 이사가 2022년부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광진생협에 대한 지원은 광진자활이 내부적으로 규제하였던 방향이었으나 이  
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대답하다
- 이현주 이사가 광진생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도우누리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도우누리가 3기 전략체계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  
으니 제안 내용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김은미 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다.
- 윤여운 이사가 현실적으로 도우누리가 조합원외 다른 지위를 만들어서 직원조  
합원에 대한 법적 부분을 피하고 소속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하  
다.
- 이현주 이사가 광진생협 법인은 해산하고 매장을 도우누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도우누리로 참여하는 조건을 만들 것을 주문하다.
- 문호영 이사가 운영의 어려움을 시작으로 매장도 어려워 외부지원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우누리와 협력방안에는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  
을 주문하다.
- 장이환 생협이사장이 광진생협 이사회는 광진구에 생협매장 하나는 있어야겠다  
는 의지이고 그 동안 자활지원이 있었지만 우리의 힘이었다고 강조하다.
- 제안한 내용이 도우누리 비전과 맞췄으면 한다고 말하고 지금은 다들 지쳐  
있다고 말함
- 민동세 이사장이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광진생협 이  
사회에서 도우누리에 제안한 생협매장 운영과 조합원 통합에 대해 방향을 승인  
받으려 한다고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광진생협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준비단위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도록 함
- 이사님들의 우려와 준비과정에서의 검토되어야 할 제안 내용을 추진단위에 요  
청하도록 함

○ 이사회가 다른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묻고, 참석한 이사들이 없다고 답하자 이사회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 의결을 묻다.

- 참석한 이사 모두가 동의하고 이사회가 가결되었다고 하다.

○ 주요 의결 사항

(1) 광진생협에서 제안한 매장운영과 조합원 통합에 대한 준비를 승인하다.

(2) 이사회는 별도의 준비단위에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추진하며, 이사회에서 제기한 직원조합원 비율 문제 등 이사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의결안건 제3호 중계요양원 위탁 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의 건을 상정하고 질의, 논의 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회가 안건의 제안배경과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법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토론과 의결을 요청하다.

- 우리 법인은 2019년 3월 1일부터 중계요양원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종료됨

- 9월 5일, 이사회가 정재흠원장과 중계요양원 1노조 요구사항, 시설 경영현황, 시설장의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노동조합과는 2022년 1노조와 임단협 협정 이후 갈등구조는 해소되었으며 개별 노조의 이해문제로 인한 사안과 금년도 임단협이 주요 의제이며, 시설경영상황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1년 정도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장은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함

- 서울시는 6월 중순 무렵에 지침을 바꿔,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E 등급을 받은 시설은 재수탁이 안 되는 거로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하였다고 함 (9.14, 어르신복지과 과장 면담)

○ 이병화 이사가 조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중계요양원 인수시 정산 내역 즉 기준일 내 청구금 명세의 소유부분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

다.

- 서노협이 법인격을 득하고 시립요양원을 직접 수탁하려는 흐름이 있고 중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검토를 의뢰한 것 같다고 말함
- 민동세 이사장이 성민이 청구금을 두고 가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요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노사문제, 임금채권을 도우누리가 인수하는 것이었다고 답하다.
- 김알음 이사가 원장인 새로 오시고 이제 야 회계, 행정이 체계적으로 셋팅 되었으며 노사 간에 큰 갈등도 없다고 설명하다.
  - 표면적으로 소란스럽지만 내용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말함
- 이현주 이사가 중랑요양원 재재수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있는데 결국 직원들의 요청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중계 구성원들이 우리 법인에 대해 소속감이 있는지, 정재흠 원장의 노력과 의지는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다.
  - 바뀐 조례에 의하면 결국 1회, 3년만 보장되는 재수탁이라고 지적함
- 민동세 이사장이 지금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우리 법인에게 수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우리 법인은 시설 운영 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차입금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대응일 것이라고 설명하다.
  - 그럼에도 다른 환경이 조성되어 재수탁 논의가 된다면, 이사장이 정재흠원장과 기밀하게 협의하면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줄것을 요청함
- 이사장이 다른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묻고, 참석한 이사들이 없다고 답하자 이사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 의결을 묻다.
  - 참석한 이사 모두가 동의하고 이사장이 가결되었다고 하다.
- 주요 의결 사항
  - (1) 중계요양원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의 방침에 따라 수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체불임금과 차입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 (2) 그럼에도 재수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 이사장이 정재흠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위임한다.

- 의결안건 제4호 도우누리 정년제도 개선의 건을 상정하고 질의, 논의 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가 안건의 제안배경과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준비 추진단(TFT) 구성을 의결해 줄것을 요청하다.
  - 우리 법인의 정년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원(서비스직)의 정년은 정하지 않으며, 관리직원(사무관리직)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정하고 있는데, 서비스직 직원 중 건강상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만이 있고 사무관리직은 정년 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과 불일치로 계속 근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법인 내 종사자의 복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불만과 사회서비스업 산업구조 상 비용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적인 검토 요구됨
  - 우리 법인의 정년제도와 기타 복지관련 제도개선을 준비하는 추진단(TFT)을 구성하고 그 결과물을 이사회에 제출하 하도록 논의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사회 승인을 요청함
- 김은미 이사가 의제논의가 늦은 것 같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다
- 송인옥 이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해당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자고 제안하다.
  - 민동세 이사가 사무관리직 중 정년이 도래한 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적절하지 않지만, 서비스직의 경우 근로 조건 악화로 볼 수 있어 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다.
- 이사회에서 문호영 센터장, 김은미 이사와 한우리돌봄센터 직원대표 1명, 늘푸른돌봄센터 직원대표 2명(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아가마지 직원대표 1명으로 추진단을 추천하다.
- 이사가 다른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묻고, 참석한 이사들이 없다고 답하자 이사가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과 이사회 추천위원 6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사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는 안에 대해 의결을 묻다.
  - 참석한 이사 모두가 동의하고 이사가 가결되었다고 하다.

○ 주요 의결 사항

- (1) 법인의 정년제도와 기타 복지관련 제도개선 추진단(TFT)를 구성한다.
- (2) 추진단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6인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의결안건 제5호 도우누리 조합비 제도화의 건을 상정하고 질의, 논의 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장이 안건의 제안배경과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비 제도화 추진단(TFT) 구성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다.

- 협동조합 법인격으로 전환 후 사무조직을 구조화하고, 법인 및 조합원 활동과 협동조합 사업장 활동을 조직체계로 분리하고 사무국의 재정마련과 사업장의 조합원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해 왔음
- 논의과정에서 사무국의 재정마련은 외부후원이나 공모사업의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사업장을 전조합원화로 제도화하면서 조합비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음

○ 송인옥 이사가 도우누리 전략체계 주요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TF 구성을 동의하다.

- 주민연대가 고민이 되는데 현재 활동가 협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회비납부가 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 민동세 이사장이 박용수 주민연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우누리에 조합원 중에서 주민연대 회비납부 비율이 높지 않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함

○ 김미진 이사가 새로 입사한 사회복지사에게 공동체 소속감이 강조되지 않고 또 강조하는 사람도 없는 게 문제하고 지적하다.

○ 이사회에서 추진단 위원으로 송인옥 이사, 조남식 센터장, 이병화 이사, 권은자 이사를 추천하다.

-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위임함

○ 이사장이 다른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묻고, 참석한 이사들이 없다고 답하자 이사장이 조합비 제도화 추진단 구성과 이사회 추천위원 4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는 안에 대해 의결을 묻다.

- 참석한 이사 모두가 동의하고 이사장이 가결되었다고 하다.

○ 주요 의결 사항

(1) 법인의 조합비 제도화 추진단(TFT)를 구성한다.

(2) 추진단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4인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의결안건 제6호 한우리돌봄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의 건을 상정하고 질의, 논의 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장이 안건의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에 대해 송인옥 이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송인옥 이사가 지난 7월 10일 개최된 한우리돌봄센터 제2차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한우리돌봄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기로 심의됨

- 한우리돌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서비스 제공원칙을 기본원칙과 제공원칙으로 분리하여 규정을 세분화 하도록 개정함

- 한우리돌봄센터 운영규정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규정 신설하고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취업규칙 내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는 내용으로 개정함

○ 민동세 이사장이 한우리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제안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법률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큰 쟁범이나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다.

○ 이사장이 다른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묻고, 참석한 이사들이 없다고 답하자 이

사장이 한우리돌봄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에 대해 의결을 묻다.

- 참석한 이사 모두가 동의하고 이사장이 가결되었다고 하다.

0 주요 의결 사항

(1) 한우리돌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전	개정후
<p>제4조 (서비스 제공원칙)</p> <p>① 서비스를 공급받는 이용자에게 연령과 신체적 불편에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없는 모든 인간과 동일한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서비스를 공급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p>	<p>(개정 및 신설)</p> <p>제4조 (서비스 기본원칙) 센터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보호 : 서비스를 공급받는 이용자에게 연령과 신체적 불편에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없는 모든 인간과 동일한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li> <li>2. 차별금지 :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li> <li>3.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li> <li>4. 자기결정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여서는 안 된다.</li> <li>5. 정보제공 : 센터는 이용자에게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내용 선택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li> <li>6.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와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li> </ol> <p>(신설)</p> <p>제5조 (서비스 제공원칙) 센터와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제공원칙을 준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의 권리 등 설명) 센터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당사자 및 가족의 권리,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도록 한다.</li> <li>2. (계약서 작성)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시작 전에 서비스 내용 및 권리와 책임, 개인정보보호, 계약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보관한다.</li> <li>3. (이용자정보 숙지) 제공인력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li> <li>4. (욕구사정)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li> </ol>

	<p>5.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센터는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용자 등의 선호와 가치가 반영되도록 한다.</p> <p>6. (계획된 서비스제공) 제공인력은 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p> <p>7. (이용자의 거부 의사 존중) 센터 및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서비스 일부에 대한 거부 의사 등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p> <p>8. (불법영리행위 금지) 센터 및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기회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금전차용, 투자알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p>9. (모니터링) 센터는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부당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p>
없음	<p>(신설)</p> <p>제11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p> <p>제3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센터는 전담관리인력 및 활동지원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피해 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장을 적용한다.</p>

### 3. 회의록 서명

- 제6차 정기이사회 결과를 이사장이 정리하고, 10월 4일(수) 17시까지 이메일 및 SNS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이견이 없어 의사록으로 채택 결정, 서명하기로 함. 끝.

이사 날인 이사장 민 동 세 (서명)

이사 권 은 자 (서명)

이사 김 미 진 (서명)

이사 김 알 음 (서명)

이사 문 호 영 (서명)

이사 박진환	(서명)
이사 송인옥	(서명)
이사 이성례	(서명)
이사 이병화	(서명)
이사 이현주	(서명)
이사 김용운	(서명)
이사 김은미	(서명)
이사 윤여운	(서명)